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8542
----------	-------

제안연월일 : 2026. 4.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가. 심사경과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 경과
2202823	박홍배의원	2024. 8.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4.11.2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li> <li>·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 상정 후 축조심사</li> </ul>
2205408	임이자의원	2024. 11.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li> <li>·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 상정 후 축조심사</li> </ul>
2217436	박해철의원	2026. 3.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3.30.)</li> <li>·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 상정 후 축조심사</li> </ul>
2217508	박홍배의원	2026. 3.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3.30.)</li> <li>·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 상정 후 축조심사</li> </ul>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 경과
2217663	이용우의원	2026. 3. 20.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3.30.)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 상정 후 축조심사
2217813	김태선의원	2026. 3. 27.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3.30.)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 상정 후 축조심사

나.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에서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4.7.)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최근 근로시간 단축, 연차휴가의 분할 사용, 육아·돌봄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형태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기를 희망하더라도 휴게시간을 채우기 위해 사업장에 추가로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여려는 것임.

둘째,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 별 운영 기준이 상이하고, 육아·돌봄·자기계발 등 다양한 생활 수요에 대응하는 데에도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셋째, OECD 회원국 중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가 높은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자유로운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하여, 과로 사회로부터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 및 ‘실노동시간 단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 등을 금지함으로써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권장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54조제2항 신설).

나.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도록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0조제5항 신설, 제110조제1호).

다.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0조제9항 신설, 제114조제1호).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본문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⑨ 사용자는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0조제7항”을 각각 “제60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제60조제7항”을 각각 “제60조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60조제7항”을 “제60조제8항”으로 한다.

제110조제1호 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4항·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114조제1호 중 “제67조제1항”을 “제60조제9항,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4항·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

-----  
----- 제60조제8항 -----  
-----  
-----.

1. 제60조제8항 -----  
-----  
-----  
-----  
-----  
-----  
-----

2. -----  
-----  
-----  
-----  
-----  
-----  
-----

제60조제8항 -----  
-----  
-----  
-----  
-----  
-----

② -----  
-----  
-----



<p>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p> <p>2. (생략)</p> <p>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u>제67조제1항</u>·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p> <p>2. (생략)</p>	<p>-----</p> <p>-----</p> <p>2. (현행과 같음)</p> <p>제114조(벌칙) -----</p> <p>-----</p> <p>-----.</p> <p>1. -----</p> <p>-----</p> <p>----- <u>제</u></p> <p><u>60조제9항, 제67조제1항</u>-----</p> <p>-----</p> <p>-----</p> <p>-----</p> <p>-----</p> <p>2. (현행과 같음)</p>
---	---